

의안번호	제855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이태훈 의원 등 8인
발의연월일	2025년 3월 4일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55
----------	-----

발의연월일 : 2025년 3월 4일
발 의 자 : 이태훈, 노금식, 김호경,
박용규, 변종오, 임영은,
황영호, 유상용

1. 제안이유

「약사법」 및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심야 시간대 도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높이고, 도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야시간 및 휴일에 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명확화, 운영시간 규정 신설
(안 제3조)

다. 법령에 따른 지정 취소사유 반영 및 재지정 제한 규정 신설(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의 : 충청북도 바이오식품의약품국 식의약안전과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심야시간”을 “심야시간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개설 등록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심야시간대”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중 도지사가 정하는 시간을 말한다.
3. “공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심야시간·공휴일”을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절차 등 지정·운영에”를 “절차는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및 제11조의4를 따르며, 세부적으로”로, “따로 정한다”를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로 하고,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3.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조에 따른 운영시간 미준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심야시간</u> 및 <u>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의약품 구입 불편과 오·남용을 방지하고 충청북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u>심야시간대</u> ----- ----- ----- -----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 <u>공공심야약국</u> ”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개설 등록한 약국으로서 <u>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u>공공심야약국</u> ”이란 「약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개설 등록한 약국으로서 <u>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u> 2. “ <u>심야시간대</u> ”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중 <u>도지사가 정하는 시간을 말한다.</u>

제3조(지정·운영 등) ① 도지사는 심야시간·공휴일에 충청북도민의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해 약국을 개설한 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지정 취소)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생략)

2. 도지사가 정하는 운영시간을

3. “공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지정·운영 등) ① -----
--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

② -----
--- 절차는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르며, 세부적으로 ----- 정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로 하고,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지정 취소) ①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부담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공공심야약국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
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
은 경우

4.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제6조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이용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저조하고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
게 사용한 경우

3.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
달하게 된 경우

4. 제3조에 따른 운영시간 미준
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법 시행규칙 제11조
의6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관계법령 발췌

□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⑥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헌법불합치, 2000헌바84 2002. 9. 19.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1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3. 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69조의4제1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접근이 쉬운 곳에 위치할 것
2. 제11조의5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근무인력을 갖출 것
3.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 또는 시정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제11조의4(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약국개설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공공심야약국 지정 신청서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발급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휴무일 운영기준 등 준수사항을 서면으로 함께 교부해야 한다.

제11조의5(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이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

심야약국의 효율적·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제11조의6(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법 제21조의3제5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제11조의5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②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된 약국개설자는 지체 없이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도내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 및 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따른 경비의 지원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제4조(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2029년까지 5년으로 하고,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음
- 공공심야약국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운영(공휴일 포함)하고, 근무약사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하여 운영 시간당 4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나. 추계 결과 : 1,664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을 시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2025년 263백만원 시작으로 향후 5년간 1,664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 계
예 산	263	263	350	350	438	1,664

- 산출내역 : 시간당 40천원 x 3시간/일 x 365일 x 6개소 = 262,800천원

· 3차년도(2027년)부터 수요를 감안하여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산정함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지원 개소수	6	6	8	8	10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262,800	262,800	350,400	350,400	438,000	1,664,400
(안 제4조) 공공심야약국 지원		262,800	262,800	350,400	350,400	438,000	1,664,404
재원 조달		262,800	262,800	350,400	350,400	438,000	1,664,400
의존 재원	소 계	131,400	131,400	175,200	175,200	219,000	832,200
	보조금	131,400	131,400	175,200	175,200	219,000	832,20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39,420	39,420	52,560	52,560	65,700	249,660
	지방세	39,420	39,420	52,560	52,560	65,700	249,66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시군비		91,980	91,980	122,640	122,640	153,300	582,54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